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51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한지아·박정하·백종현  
김재섭·우재준·고동진  
배준영·박성훈·인요한  
서범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 법률 제 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